

【문 1】 민사소송법상 법원서기관 · 법원사무관 · 법원주사 · 법원주사보(이하 ‘법원사무관등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부수사무를 처리하는 단독제 기관이다.
- ② 법원사무관등은 법관이라 해도 대행할 수 없는 고유의 권한을 갖는다.
- ③ 법원사무관등에게 법관의 제척, 기피, 회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.
- ④ 법원사무관등이 주로 행하는 사무에는 심판의 참여, 송달사무, 소송상 사항의 공증, 집행문부여 등이 있다.

【문 2】 갑이 을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다.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 관할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②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③ 갑이 을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건네준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④ 갑과 을이 소비대차에 관하여 합의로 정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,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.

【문 3】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피고표시정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고의 표시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하였다 해도 피고표시정정으로서의 법적성질 및 효과는 잃지 아니한다.
- ② 소송중단사유를 간과하고 한 본안판결은 당연무효이다.
- ③ 법원이 피고가 소제기 전에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다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며 그 판결이 확정 전이면 상소, 확정 후이면 재심에 의한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.
- ④ 피고의 경정은 상급심에서도 허용된다.

【문 4】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.
- ②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- ④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이고, 수익자(전득자를 포함한다)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하면 된다.

【문 5】 소송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.
- ② 소송요건은 재판상의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- ③ 소의 이익은 소송요건이므로 이의 흠이 있을 때에는 소가 부적법하다는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.
- ④ 세급계산서나 임대차계약금의 영수증도 증서의 진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된다.

【문 6】 갑과 을 사이의 소송에 병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려는 경우,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갑, 을 사이의 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라도 병의 독립당사자참가는 가능하다.
- ② 병이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함에 있어서 갑의 청구와 양립되지 않은 권리 또는 갑에 우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.
- ③ 병이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를 함에 있어서 갑의 청구와 양립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도 상관 없다.
- ④ 법원은 반드시 갑, 을, 병 전원에 대하여 하나의 중국판결을 하여야 하고, 그 중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할 수는 없다.

【문 7】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민사소송법은 공격방어방법을 변론종결 전까지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는 수시제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, 제출순서를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그 순서를 놓치면 실권하게 함으로써 소송지연을 방지하고 있다.
- ② 재판장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관하여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제출, 증거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,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③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하려면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하지만, 반드시 상대방의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.
- ④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당해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다.

【문 8】 소송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법원의 심판의 한계는 소송물에 한하므로 그 소송물과 다른 소송물이나 그 소송물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할 수 없다.
- ② 어음채권에 기한 청구와 원인채권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.
-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고 개개의 무효원인은 공격방법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.
- ④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다른 소송물이다.

【문 9】 제3자 소송담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서면이나 구술로 증명할 수 있다.
- ②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,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상실한다.
- ③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이다.
- ④ 여러 선정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.

【문10】 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보조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·방어·이의·상소,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.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.
- ③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 증거물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법원에 제출되었더라도 법원이 이들 증거에 터 잡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.
- ④ 보조참가인은 참가 당시의 소송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보조참가인으로서 상고를 제기하는 때에도 피참가인의 상고 제기기간 중에만 할 수 있다.

【문11】 불변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도,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고 단지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가 생긴다.
- ② 서울에서 수원으로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항소장이 4일만에 배달되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.
- ③ 불변기간의 준수에 있어 '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'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, 그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된다.
- ④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.

【문12】 청구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, 이 경우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잘못이지만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책문권의 상실로 그 잘못은 치유된다.
- ③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.
- ④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.

【문13】 당사자의 출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때까지 제출한 소장·답변서,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.
- ②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·답변서,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다면 공증사무소의 인증이 없더라도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.
- ③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후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일이나 또는 그 뒤에 변론기일에 다시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.
- ④ 위 ③항에서 기일지정신청은 쌍방 불출석 변론기일로부터 1월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지 신청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다.

【문14】 갑이 자신은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고, 을은 병에 대해 금전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,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.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채권자대위소송은 제3자의 소송담당의 한 유형이다.
- ② 을이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에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았다면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은 을에게 미치게 된다.
- ③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후 을이 병을 상대로 같은 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.
- ④ 소송에서 갑이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갖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면, 갑의 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.

【문15】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법인 그 밖의 단체에 대한 송달은 그 대표자의 주소·거소·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하여야 한다.
- ②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원, 피용자 또는 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.
- ③ 송달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기관은 법원사무관등이고 원칙적인 송달실시기관은 집행관과 우편집배원이다.
- ④ 공시송달의 요건이 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않아도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기판력도 발생하지 않는다.

【문16】 청구의 변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상환이행청구에서 단순이행청구로 바꾸는 것과 같은 질적 확장도 청구의 변경이다.
- ②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 추가와 구청구 취하의 결합형태이므로 피고가 본안에 응소한 때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구청구의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.
- ③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피고의 방어에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익이 없으면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는 변경도 허용된다.
- ④ 청구의 변경에 의한 시효중단·기간준수의 효과는 소변경서를 제출하였을 때에 발생한다.

【문17】 당사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.
- ② 소송무능력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- ③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권 포기,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.
- ④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는 재심사유가 된다.

【문18】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상계권·취소권·해제권 등 형성권을 소송 중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변론종결 후 이를 행사하면 기판력의 실권효를 받는다.
- ② 전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후소의 잔부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.
- ③ 민사판결의 이유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후소에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문제될 경우에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의 설시 없이 배척할 수 없다.
- ④ 원고가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승소의 확정판결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피고로부터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는 승계인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.

【문19】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기초로 하여 얻은 사실을 보고하는 감정증인은 감정인이지만 증인이 아니다.
- ② 법정대리인 및 당사자인 법인 등의 대표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.
- ③ 출석의무가 있는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에 소송비용부담과 과태료 부과, 감치, 구인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.
- ④ 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하며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하여야 한다.

【문20】 소송승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당연승계가 있어도 피승계인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.
- ②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 중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에 대해 등기이전을 받은 제3자는 특정승계인에 포함된다.
- ③ 참가승계를 하면 당초의 소제기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·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.
- ④ 상고심에서는 참가승계·인수승계를 할 수 없다.

【문21】 무변론판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소장의 부분을 송달받은 경우,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위 ①항의 경우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.
- ③ 다만 위 ②항의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더라도, 답변서가 제출된 이상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다.

【문22】 서증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.
- ② 당사자가 상업장부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그 장부의 제출을 명할 수는 없다.
- ③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, 정본,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.
- ④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이 있고 그에 따른 제출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그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 신청을 철회함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.

【문23】 소액사건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소가 2,000만 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으로 특정물에 관한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.
- ② 소액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반드시 이행권고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- ③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은 없으나, 집행력은 있다.
- ④ 소액사건의 소송절차에서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, 판사의 경질이 있어도 변론의 갱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는 등의 특칙이 적용되나, 서면에 의해 소제기를 해야 함은 통상의 소송절차와 동일하다.

【문24】 가집행선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라도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이 되어야만 집행력이 생기기 때문에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.
- ②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이행판결이면 바로 집행권원이 된다.
- ③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·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·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④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.

【문25】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상고장이 대법원에 바로 제출되었다가 다시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에는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고 제기기간 준수 여부를 따져야 한다.
- ②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.
- ③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,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.
- ④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.